

# 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

## 제 7 장 포상과 징계

**제33조(장학금, 연구보조금)** ①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업 태도가 성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[개정 2013. 3. 1]

②장학금에 관한 세부규정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구분하여 정한다. 다만, 세부규정 이외의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급의 형태 및 운영은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**제34조(등록금 감면)** 소정의 수업연한을 만료하고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에게 향후 납부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**제35조(포상)**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한다.[개정 2013. 3. 1]

**제36조(징계)** ①대학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.

②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안양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